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14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이종욱 · 송언석 · 박충권
엄태영 · 조승환 · 김위상
안철수 · 서천호 · 윤한홍
조은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 학생의 부정행위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 입학할 학생 자신의 성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친족의 상훈 등 공적 활동을 입학자격 또는 사실상 우대 요소로 활용한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학 합격이 결정된다는 불신을 초래해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은 반영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학생의 입학허가

를 취소함으로써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4조의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에”를 “제9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에”를 “제12항에”로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따라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해당 학생 자신에게 귀속되는 객관적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부모·친족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기부, 직업, 학력, 훈장, 공적 활동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6 제목 외의 부분 중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제34조제4항을 위반한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경우
4. 그 밖에 입학전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u>제외한다</u>)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한다.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 ----- -----제외한다. 이하 <u>이 조에서 같다</u>)----- ----- ----- ----- ----- --.
② · ③ (생 략) <u><신 설></u>	② · ③ (현행과 같음) <u>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따라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해당 학생 자신에게 귀속되는 객관적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부모 · 친족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기부, 직업, 학력, 훈장, 공적 활동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u>

④ · ⑤ (생 략)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 ⑪ (생 략)

⑫ 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하다.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제6항에-----

-----.

⑧ 제6항에-----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⑩ -----제9항에

-----.

⑪ · ⑫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⑬ -----제12항에-----

-----.

⑬ (생 략)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허가한 학생이 <u>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⑭ (현행 제13항과 같음)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1. <u>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u> 2. <u>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u> 3. <u>제34조제4항을 위반한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경우</u> 4. <u>그 밖에 입학전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u>
--	---